

창원지방법원

제 21 민사부

결정

사건 2013비합64 사채권자집회결의인가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에스티엑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대표이사 추성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기영, 김선경, 이정환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윤근수

사건 본인 주식회사 에스티엑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대표이사 추성엽

주문

별지 1 기재 사채에 관하여 2013. 12. 20.자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2 기재

결의를 인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위 정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 1. 14.

법원기록부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4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14.

재판장 판사 고규정



판사 이재환



판사 황여진



<별지 #1>

항 목	내 용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STX 제 97 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구 분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	2012. 8. 9.
권 면 총 액	10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5.0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1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체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증으로 갈음한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은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으로 한다.
이자율	연리이자율(%) 3.00 ("표면이율")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 개월마다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위의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며,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다.

항 목	내 용						
이자지급 기한	2012년 11월 09일, 2013년 02월 09일, 2013년 05월 09일, 2013년 08월 09일, 2013년 11월 09일, 2014년 02월 09일, 2014년 05월 09일, 2014년 08월 09일, 2014년 11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2015년 05월 09일, 2015년 08월 09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NICE 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12년 07월 23일 / 2012년 07월 23일 평가결과등급 A-(부정적)/A-(부정적)						
주관회사	주관회사명 동양증권(주)						
의 분석	분석일자 2012년 07월 24일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08월 09일에 원금의 106.4301%로 일시상환되며, 원미판은 결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위의 기일에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되며,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다.						
상환방법 및 기한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각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조기상환기일</th> <th>조기상환율</th> </tr> </thead> <tbody> <tr> <td>2014년 08월 09일</td> <td>104.1794%</td> </tr> <tr> <td>2015년 02월 09일</td> <td>105.2908%</td> </tr> </tbody> </table>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2014년 08월 09일	104.1794%	2015년 02월 09일	105.2908%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2014년 08월 09일	104.1794%						
2015년 02월 09일	105.2908%						

가) 조기상환청구금액 : 가) 권면금액의 100%

항 목

내 용

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다.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라. 지급장소 :(주)우리은행 STX 남산타워지점

마. 지급일 : 2014년 08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바. 지급금액 : 각 권면금액에 상기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청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환기한	2015년 08월 09일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주)STX 기명식 보통주
납입기일	2012년 08월 09일
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사명 (주)우리은행 STX 남산타워 지점

※ 신주인수권의 조건요약(행사가액, 행사비율, 행사기간 등)

(1) 행사가액 : 8,920 원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2년 07월 2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단을 철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 행사비율

- 가)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하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다) 아래 (4)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전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종합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여,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철사한다. 명확한 의미를 위하여 첨언하면,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 그 권별금액의 합산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나눈 수(1주 미단의 단수주는 철사한다)의 100%를 행사수식수로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 권별금액의 일부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는 청구 할 수 없다.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2012년 09월 09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 1개월 전일(2015년 07월 09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4)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차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차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아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 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나) 합병, 차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차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다라면 당해 합병, 차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차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 다) 상기의 가록 및 나록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3 조 제 2호에 의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제"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2012년 11월 09일, 2013년 02월 09일, 2013년 05월 09일, 2013년 08월 09일,
2013년 11월 09일, 2014년 02월 09일, 2014년 05월 09일, 2014년 08월 09일,
2014년 11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2015년 05월 09일.

- 라)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진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 마)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 바)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협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질사한다.

(5)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기타사항

- 1) 상기 권면이자율 연 3.00%는 표면이자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5.0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 2)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5.00%로 합니다.
- 3)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각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08월 09일 104.1794% / 2015년 02월 09일 105.2908%
- 4)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인 당사와 인수단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자세한 산정방식은 하단의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5)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동양증권(주), 한화증권(주), 엘아이자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 판액인수방식으로 참여합니다.
- 6) "본 (주)STX 제97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2년 08월 29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2년 08월 09일입니다.
- 7)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으로 합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은 본 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되므로 등록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9)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무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 위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10,000원당 가액입니다.
- 11) 일반 공모청약은 2012년 08월 06일 ~ 2012년 08월 07일(2일간)이며, 대표주관회사인 동양증권(주) 및 인수회사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인수회사 중 키움증권(주)는 본점, 홈페이지, HTS, ARS, 고객만족센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별지 #2>

제3호 출자전환의 건

- 사채권자들은 사채총액의 58%(이하 “출자전환 대상채권”)를 출자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신주”)을 인수하기로 한다.
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비율(무담보채권총액의 출자전환 비율)이 상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채권자들의 출자 비율도 그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 발행회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감자 이후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며, 신주의 발행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 발행가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액면금액(2,500원)으로 하기로 한다.
- 발행회사가 상기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 출자전환 대상채권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이자(연체이자 포함)가 발생하지 아니한다.